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11

발의연월일: 2023. 2. 14.

발 의 자:전해철·김회재·임종성

황 희·김민석·정태호

김종민 • 이동주 • 박 정

양기대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 록 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수탁 기준의 세부사항만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령에서는 기준의 준수 주체이자 의무 부과 범위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그 업종·규모나 폐기물 배출량 등에 따라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 매립

시설의 경우, 매립지에서 오염 침출수 등이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가동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해당 시설이 경매·환가·매각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수된 이후 인수인이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결부된 권리·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 역시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

이에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적 공백 및 하자를 보완하고, 환경오염 등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폐기물 처리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환경부 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2제3항·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 나.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는 사업자가 폐기물 감량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데 그쳐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관련된 종전 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제7항·제68조제2항제2호).

다. 종전의 사업자가 사용종료·폐쇄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인수한 자도 해당 시설에 침출수 처리시설설치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50조제5항).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를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처리 시설을 인수한 자

제6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의 의무 등) ①・② (생 략)	자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	③음식물류 폐
<u>기물 배출자</u> 는 제14조제1항 또	기물 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스스로 수집 · 운반 또는 재활	
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 · 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⑤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는
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	
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	
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	

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2. (생략)
-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
무 등) ①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중 업종ㆍ규모
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⑥ (생 략)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 ⑧ ~ ⑩ (생 략)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 리 등) ① ~ ④ (생 략) 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 1.·2. (생 략) <u><신 설></u>
- ⑥ ~ ⑧ (생 략)

제68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3. (생략)
- 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 12의4. (생략)
- ③ ④ (생 략)

- 1. 2. (현행과 같음)
- 3.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폐 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 1. ~ 1의3. (현행과 같음) <u><</u>삭 제>
 - 3. ~ 12의4.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